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5일(월), 오후 4시 00분 / 대회의실(9동 2층)
2. 소집통보 : 2024년 11월 18일(월)
3. 의원 참석 현황 : 의원정수 11명중 9명 참석
(참석자 : 김, 한, 염, 최, 송, 안, 유, 김 9명)
(불참자 : 김, 박)
4. 회의안건 : 제1안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심의
제2안 2024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자문

5. 회의내용

[간사] 본 회의시작 전 제5차 대학평의원회의에서 논의한 2030 대전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 계획(안) 수정사항 반영 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회의가 진행될 것임을 말하다.

[의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2024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성원 되었음을 선언하고 금일 안건은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심의와 2024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자문이라고 말하며 세부내용에 대한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10월 17일자 대학 직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학칙 제5조, 제8조 및 제8조의3, 제87조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제25조의3은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가 모집 중에 있어서 자율전공학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이나 지침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8조는 글로벌대학30 체제에서는 전과가 지금보다는 정량목표가 많다보니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35조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는 자기주도선택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학칙시행세칙 제58조에 공통선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제35조의3은 글로벌대학30 체제에서의 전공 이수 형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전공이수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제35조의4는 글로벌대학30 체제에서 보건의료분야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주요 교육과정 중 하나인 가상학과 운영의 근거 및 제반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제87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제규정에 학교기업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추후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별표 제7은 2025년 2월 중에 졸업생이 배출될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학위기 문구를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부칙에는 대학 직제규정이 2024년 10월 17일자 개정됨에 따라 이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세부내용에 대해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다.

< 2024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 >

학칙 제25조의3(HT자율전공학부)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3(HT자율전공학부) ①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여 전공당해 기간을 거친 후 전공(학과)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학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01]

의 장	부 의 장	평 의 원
김	한	유

학칙 제28조(전과)	
현행	개정(안)
<p>제28조(전과) ① 생략</p> <p>② 전과의 과목 전의정원은 전의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5.01.>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 및 어류인, 어류기사 연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도 전의할 수 있는 전의정원은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전과의 과목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p> <p>④ <개정 2013.05.01, 2015.01.01, 삭제 2024.05.01.></p> <p>⑤ 생략</p>	<p>제28조(전과) ① 좌동</p> <p>② 전과의 과목 전입정원 및 전출정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5%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 및 어류인, 어류기사 연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어류인, 어류기사 연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삭제 2024.12.01.></p> <p>④ <삭제 2024.05.01.></p> <p>⑤ 좌동</p>

학칙 제35조(교육과정)	
현행	개정(안)
<p>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 자기주도선택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②~⑤ 생략</p>	<p>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 공헌선택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②~⑤ 좌동</p>

학칙 제35조의3(전공의 이수)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5조의3(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소속학과 전공(후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p> <p>2. 부전공: 학생이 소속된 학과 이외의 전공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p> <p>3. 소문원 전공과정: 특정 분야에 지정된 최소학점을 이수하는 마이크로디그리나 노디그리 과정으로 학점 59점 이하를 전공</p> <p>② 각종 증명서와 졸업증서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p> <p>[본조신설 2024.12.01.]</p>

학칙 제35조의4(융합전공)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5조의4(융합전공) ①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전공회합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12.01.]</p>

학칙 제87조(학교기업의 설치)	
현행	개정(안)
<p>제87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사업종류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대전보건대학교의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회복지시설</p> <p>2. 노인복지시설</p> <p>3. 기타 규정이 정한 시설</p> <p>② 생략</p> <p>③ 학교기업은 윤리지킴이,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종류를 사업 내용으로 한다.</p>	<p>제87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대전보건대학교의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1. 사회복지시설</p> <p>2. 노인복지시설</p> <p>3. 기타 규정이 정한 시설</p> <p>② 좌동</p> <p>③ 학교기업은 대학의 각 (학)과와 연계하여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 내용으로 할 수 있다.</p>

학칙 별표7	
현행	개정(안)

의 장	김	부의장	한	평의원	유
-----	---	-----	---	-----	---

[평의원 안] 개정안 제35조에서 공통선택 과목이 어떤 것인지 묻다.

[교무팀장] 학칙시행세칙 제58에 졸업최소 이수학점이 있는데 교양, 전공, 공통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선택은 소속 학과 전공교과목, 교양교과목, 타학과 전공교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타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소속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부여되며, 5학점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타 학과를 포함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다.

[평의원 안] 그러면 학칙에 공통선택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학생들이 이미 교양과 전공이 있는데 공통선택으로 타 학과 전공이나 교양을 들으면 소속 학과에서 전공을 이수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는 않은지 묻다.

[교무팀장] 학칙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학칙시행세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현재 학칙시행세칙에 소속 학과에서 들어야하는 졸업최소 이수학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선택이 있어도 학생들이 타 학과 강의를 많은 비율로 수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의 장] 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되었고 학칙 제25조의3에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칙의 시행일자가 2024년 12월 01일 이어서 시간이 촉박한데 현재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다.

[교무팀장] 교무처에서 지침으로 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칙이 공표되는 대로 시행지침을 확정할 예정임을 답변하다.

[의 장] 제28조 전과부분에서 현재 개정안 문구보다는 어순을 바꾸어서 (학)과의 전입정원으로 하고 전출과 보다는 전출(학)과 같이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묻다.

[교무팀장] 해당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겠음으로 답변하다.

학칙 제28조(전과)	
현행	개정(안)
제28조(전과) ④생략 ④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 <개정 2013.05.01.>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 및 의료인, 의료기시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과목도 전입할 수 있는 전입정원은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개정 2013.05.01., 2015.01.01., 삭제 2024.05.01.> ④생략	제28조(전과) ④최종 ④(학)과별 전과의 전입정원 및 전출정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정하며, 전출정원은 전출(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5%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 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의료인, 의료기시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2024.12.01.> ④ <삭제 2024.05.01.> ④최종

[평의원 설] 이번에 새롭게 복수전공 부전공이 신설되고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복수전공이면 36학점 이상, 부전공이면 21학점 정도 이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과연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향후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묻다.

[교무팀장]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2개학과 내지 3개학과의 융합과정인 가상학과라는 개념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과정을 학위증서에 표기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개 내지 3개학과가 융합하게 되면 그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미 수강했던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목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다소 줄여 줄 수 있을 것임을 답변하다.

[의 장] 복수전공 같은 경우 등록금을 별도로 추가해서 납부하는지 묻다.

[교무팀장] 등록금은 별도 추가되지 않고 학생 본인이 커리어를 향상시키거나 전공학습을 다양

의 장 김		부의장 한		평의원 유	
----------	--	----------	--	----------	--

화하기 위한 과정임을 답변하다.

[평의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국시를 볼 수 있는지 묻다.

[교무팀장] 의료기사 등 국시학과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면허와는 관계 없이 학생 본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답변하다.

[평의원] 면허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면허자격이 안되는 것인데 혹시 융합과정을 신설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다.

[교무팀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대학 30 체제에서 보건의료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이라는 목표가 있고, 융합교육과정인 가상학과는 글로벌대학 30에서의 인재양성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답하다.

[평의원] 사실 국시를 치루어야 하는 학과 학생들이 가상학과를 수강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하다.

[교무팀장] 글로벌대학 30 체제하에서는 의료기사에 관련된 학과뿐만 아니라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가 가상학과에서 개설된 과정을 이수하여 보건의료분야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의미도 있음을 언급하다.

[의 장] 학교기업에서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지금은 여러 학과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현재는 학교기업이 폐업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현장실습을 연계하던 학과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행정상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추후 학교기업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학과에서 연계하여 실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 학과를 특정하지 않고 명시하였음을 답하다.

[의 장] 별표7의 전문기술석사 학위기에 "전문기술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므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부분을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각 평의원] 이에 다른 의원들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다.

[의 장] 다른 질문이 있는지 의원들에게 질의하다.

[의 장] 일정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지와 각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평의원] 앞에서 수정 요청한 것을 수정하여 학칙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대 없이 동의를 표하고 재청하다.

[의 장] 이에 금일 상정된 2024학년도 제4차 학칙개정안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됨을 선포하고 다음안건에 대해서 기획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장] 2024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자문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 마이스터대지원사업비, 고교학점제 지원금 조정 등으로 전입 및 기부금수입 감액, 미래 내일일경험사업비 조정으로 교육부대수입 증액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수입 증액 편성을 설명하고, 세출 부문 초빙교원 1인 채용에 따른 보수 증액, 사업비 증감에 따른 지출 예산 조정으로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외 증액과 고정자산매입지출 감액으로 세입·세출 각 1차 추경예산 대비 549,277천원 증액된 65,537,124천원으로 2024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설명하다.

의 장 김	부 의 장 한	평 의 원 유
----------	------------------	------------------

의 장] 자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평의원 초 ...] 학교기업이 폐업되었고 현재는 정리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다.

[기획팀장] 현재 학교기업인 이안요양원의 특성상 입소자들의 전원 퇴소 조치 및 폐업 진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관리비 지출에 있어 학교 기업 전출금을 통해 지원하였고 이는 노인요양시설 폐업신고 이후 기존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설명하다.

[평의원 송 ...] 학교소유의 건물이라면 공실 시, 관리비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기획팀장] 현재 학교 소유인 2~6층은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최소한의 고정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여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평의원 최 ...]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다.

[기획팀장]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의 경우,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시 처분도 가능성을 설명하며 현재 대학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공간 활용 논의와 외부 공간 임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5층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수입이 진행됨을 답하다.

의 장] 현재 5층에 임차인이 있다고 했는데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묻다.

[기획팀장]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별도의 월세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임을 답변하다.

의 장] 다른 질문이 있는지 의원들에게 질의하다.

의 장] 일정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정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지와 각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평의원] 의장의 의견에 반대없이 동의를 표하고 재청하다.

의 장] 2024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정된 내용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함을 선포하고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부의장 및 유 ... 평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친다.(16시 56분산회)

의 장 김 ...	부 의 장 한 ...	평의원 유 ...
--------------	----------------------	--------------

2024년 11월 25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김 순

부 의 장 한

평의원 최

평의원 염

평의원 최

평의원 송

평의원 안

평의원 유

평의원 김

평의원 김

평의원 박 주